

참여연대 **보고서**

2011. 06. 19 | 제2011-11호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223)에 대한 의견

## 차례

---

요약	3
의견제시 배경	4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 의견	5
1.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제한 제도 도입	
2. 취업제한 대상 업체 확대 및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확대	
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기능 강화	
4. 그 외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 추가 의견	9
<표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참여연대 의견 비교표	10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본 보고서는 2011년 6월 14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223)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로비·청탁·알선 등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제한과 업무취급제한 제도 도입 및 처벌조항 신설에 찬성함. 그러나 현직에 있으면서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행위의 로비 대상이 되는 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하며, 재산공개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기간도 퇴직 전·후 1년으로 너무 짧아 확대해야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 확대하고 취업의 개념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업무연관성의 판단기준을 법률로 명시한 것은 퇴직공직자의 '경력세탁'을 방지하고 취업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연대가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임. 그러나 업무관련성의 부서를 넘나들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 등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법무법인 등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이 포함된 것은 찬성. 그러나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대통령령에 연간 외형거래액 3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할 예정으로 파악)인 업체로만 규정되어 있음. 영리사기업체의 취업제한 대상 업체의 범위 확대 요구도 계속 있어 왔던 만큼 이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야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 확충을 위해 민간위원의 정원을 늘리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설치하며 해당 단체장의 재취업 여부 확인 및 보고 의무화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둘 필요가 있음.
- **현직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행위 제한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합니다.**
  -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행위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청탁을 현직 공직자가 받아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임.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개정안임. 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막기 위해 청탁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선물 등 향응의 수수금지 등을 명문화해야 할 것임.
  - 관료들의 반발이 큰 사안인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임.

###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불법로비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

-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음.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권과 로펌, 군수업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고위공직자들이 전관예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됨.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퇴직후취업제한제도가 존재하지만 제도에 허점이 많고,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온정적·형식적 심사를 해와 실제로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지 못하고 있었음.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2003년과 2004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으며, 2005년에는 참여연대의 청원안이 일부 반영되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음. 또한 2006년부터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음.
- 저축은행 사태를 시작으로 공직자들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내놓았음. 정부가 내놓은 근절방안에는 그간 참여연대가 주장해왔던 제도개선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공직자윤리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정부는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인기 의원이 이 내용이 대부분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6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된 상태임. 그 외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14개 이상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기다리고 있음.
- 참여연대는 지난 6월 8일 이해충돌 행위를 직접 규제하고 취업제한제도를 보완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 한 바 있음. 이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정부안인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었음.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는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함.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가 시급한 문제인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함.

#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 의견

## 1.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제한 제도 도입

### 1) 주요 내용

-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등”을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으로 하여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까지 포함.(안 제1조, 제4장 제목)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는 퇴직 후에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퇴직 후 1년간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제18조의3제1항)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알선을 금지하고 재직 중인 취업심사 대상자는 일정 업무와 관련한 업체를 상대로 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기관의 취업심사 대상자가 일정 업무와 관련한 업체로의 취업 알선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 취업제한 업체로의 취업,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29조, 제30조 제1항)

### 2) 참여연대 의견

-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뿐 아니라 관련업무 취급·청탁·알선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에 찬성.
- 특히 업무취급 제한의 경우 부서를 넘나들며 포괄적인 청탁행위나 로비활동을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재산공개대상자)들의 기관에서 취급했던 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금지하고 퇴직 후 1년 동안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진전된 내용임. 그러나 그 기간이 1년으로 너무 짧음.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 후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퇴직공직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해충돌 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직 공직자들의 청탁행위에 대한 보고의무도 추가해야 함.
- 이해충돌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 찬성. 그 처벌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취업제한 위반과 달리 행위제한 위반은 보다 이해충돌이 명확하므로 처벌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개정안은 업무취급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5천만 원 이하의 과태

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관예우의 혜택을 누리는 고위공직자의 소득이나 불법로비의 대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고 과태료로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기는 어려워 보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위제한 위반과 마찬가지로 업무취급제한 위반 시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임

## 2. 취업제한 대상 업체 확대 및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확대

### 1) 주요 내용

- 업무연관성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와 협회 외에도 유·무한 법무법인·법무조합·법률사무소 및 회계법인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포함.(안 제17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안 제17조 제2항)
-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 업무 추가.(안 제17조 제4항)
- 취업제한 업체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17조 제7항)
- 취업의 개념을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 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까지 규정.(안 제17조 제3항)

### 2) 참여연대 의견

- 개정안이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로 규정하여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업체로 취업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다른 부서로 옮겨 일하는 '경력세탁'을 막고,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 업무를 추가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
-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퇴직공직자가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의 범위를 자본금 5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로 규정하고 있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제외되어 왔음. 대표적으로 전관예우 문제나 불법로비의 가능성이 큰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를 규제하지 못했음. 이번 개정안에 법무법인 등과 회계법인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나, 이것도 '일정규모 이상'<sup>1</sup>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법무법인으로의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할 것으로 보임.

1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일정 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연간 외형거래액 3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무기중개업체 등은 자본금으로 영리사기업체를 정할 경우 규제가 불가능함.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 거래액 30억 원 이상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 등도 포함하되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할 것임.

- 개정안은 취업의 개념을 조언·자문 등의 대가로 임금·봉급을 받는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퇴직공직자가 기업체 자문이나 고문의 명목으로 일정한 자문료를 받으며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경우를 규제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 있어 찬성.

### 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기능 강화

#### 1) 주요 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원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전체 위원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설치하도록 했음.(안 제9조)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대상 업체에의 재취업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또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사기업체 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기업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음.(안 제19조의2)

#### 2) 참여연대 의견

- 민간위원을 증원하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 설치에 찬성. 지금까지 대다수 공직자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온정적·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취업확인을 남발해 왔기 때문임. 그러나 전문위원 몇 명 둔다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고 볼 수 없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여부 확인하고 점검한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사기업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퇴직공직자의 불법취업 및 이해충돌 행위를 이중으로 감시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찬성.

### 4. 그 외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주요내용

- 취업제한 확인 요청 제도(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 시 취업하려는 업체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인지 여부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도입.(안 제18조)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보고에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 심사결과 포함.(안 제20조의2 제1항)

## 2) 참여연대 의견

-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으로 두 안 모두 찬성

## 참여연대 추가 의견

### 1. 현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제한 규정 추가

#### 1) 현직공직자의 사적인 만남 외 접촉 금지 및 청탁행위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sup>2</sup>

-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은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는 현직공직자의 문제임. 퇴직공직자로부터 부당한 청탁으로부터 현직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적인 만남 외의 접촉을 금지하고 청탁이 있을 경우 이를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해야함.
- 퇴직공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청렴의 의무와 부패 신고의 의무를 가진 현직공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임.
- 현직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의 사적인 만남을 제외한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하도록 해야 함. 특히 청탁의 경우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참여연대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입법청원안 16조의 6 (퇴직자의 이해충돌 활동 제한)>

#### 2) 선물신고 제도 강화

- 현행법에서 선물신고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응은 물론 작은 선물 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 금지되는 선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금지. 또한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등이 받은 선물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을 금지해야 함.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처리하는 절차 역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 <참여연대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입법청원안 15조의 2(금지되는 선물 등) 및 15조의 3(금지된 선물들의 처리) 참조>

#### 3) 제척규정 신설

- 공직자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거나, 자신의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그 직무로부터 제척되도록 하여 이해

### 2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2011년 입법청원안 16조의 6 (퇴직자의 이해충돌 활동 제한)중 ② 항

②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퇴직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형식이나 방법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6/08)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여연대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 제16조의2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참조>

## 2. 불법취업자 해임요구 절차 간소화

- 현행법은 규정위반 취업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임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간소화하여 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해임요구를 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불법 취업자에 대한 해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참여연대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입법청원안 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참조>
-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요구에 불복하고 소송을 통해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 소송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승소한 경우 판결시점부터 퇴직제한 기간을 새로 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임.

## 3. 취업승인의 예외적 허용

- 취업승인 제도는 취업제한 제도의 예외로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임. 그러나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조차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취업승인 조치가 남발되고 있음.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해야 함. <참여연대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입법청원안 제18조(취업승인) ③ 항 참조>

## 4. 공직자 청렴의무 강화

- 공직자의 전관예우·이해충돌 문제의 해결은 제도의 보완 뿐 아니라 공직자 스스로 공직윤리와 청렴의 의무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를 실천해야 가능함. 이를 위해 공직자의 구체적인 청렴의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청렴의무 규정에는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참여연대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 제1조의2. (공직자의 청렴의무) 참조>

<표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참여연대 의견 비교표

구분	현행	이인기 의원 개정안	참여연대 의견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에 관련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li> <li>-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은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과 같음.</li> <li>※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li> <li>○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본인이 취급한 사기업체에 대해서 처리하는 업무에 관련한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 금지(1+1 업무제한)</li> <li>-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취업 제한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과 같음.</li> <li>※위반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li> <li>○업무취급 제한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의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지 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찬성, 수정 및 추가 필요</li> <li>○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퇴직 전·후 2년으로 확대.</li> <li>○행위제한 위반은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 있음.</li> <li>○업무취급 제한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만 상정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li> </ul>
퇴직공직자 업무활동 내역보고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업무제한)의 대상자는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업체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li> <li>※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찬성, 수정 및 추가 필요</li> <li>○현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보고 제도 필요</li> </ul>
현 직 공 직 자 청탁행위 보고의무 신설	없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li>○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하도록 함</li> <li>○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의무 부여</li> </ul>
퇴직공직자의 행위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퇴직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부정행위 청탁 또는 알선 금지</li> <li>※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li> <li>○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 관련 업체를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 금지</li> <li>-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은 취업 제한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과 같음.</li> <li>※위반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자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li> <li>○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한 업체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 금지</li> <li>-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은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과 같음.</li> <li>※위반 시 기관의 장에게 시정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찬성, 수정 및 추가 필요</li> <li>○행위에 따르는 사회적 공익침해 수준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함. 처벌조항 강화 필요.</li> </ul>
업무관련성 범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	찬성

	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대통령령에 규정	○대통령령 내용을 법률에 명시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 업무 추가 ○그 밖에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	찬성
취업제한 대상 업체 범위 (특수업종 추가)	대통령령에 규정한 규모 기준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 원 이상) 외 특별한 규정 없음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다음 업체를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추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찬성, 수정 및 추가 필요 ○취업제한 대상 업체를 확대할 수 있는 일정 규모를 법률로 규정해야 함.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된 기업체 등 ○법무법인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규제
비상임직 취업제한	없음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 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써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경우로 봄	찬성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원	총 9명 (민간위원 5, 정부측위원4)	총11명 민간위원7, 정부 측 위원14	찬성
공직자윤리위원회 실무 보좌기구	없음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에서 실무 보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설치	찬성, 수정 및 추가 필요 ○적극적인 이해충돌 행위 감시 업무를 할 사무국 필요
취업여부 확인	없음	○재취업 여부 확인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보고 의무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요구 권한 부여	찬성

\* 대통령령에서 연간 외형거래액 3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1-11호 TSr201106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발 행 일        2011. 06.19  
발 행 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건 교수)  
담    당        신미지 간사 02-723-5302 shinmeeje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1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ARS후원        060-800-5300  
주    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